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검찰청]

# 서울대병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유

○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해자 백남기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급성 의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사실은 인정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위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제4권 461쪽 수사보고 및 영상 CD)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및 직사살수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부상 직후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로기록 인치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실 등 담당부서에 영장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위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 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의 제한

##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장소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
-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아래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참관 인원을 추가할 수 있음.
  - 유족 1~2명
  -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함.
-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16. 9. 28.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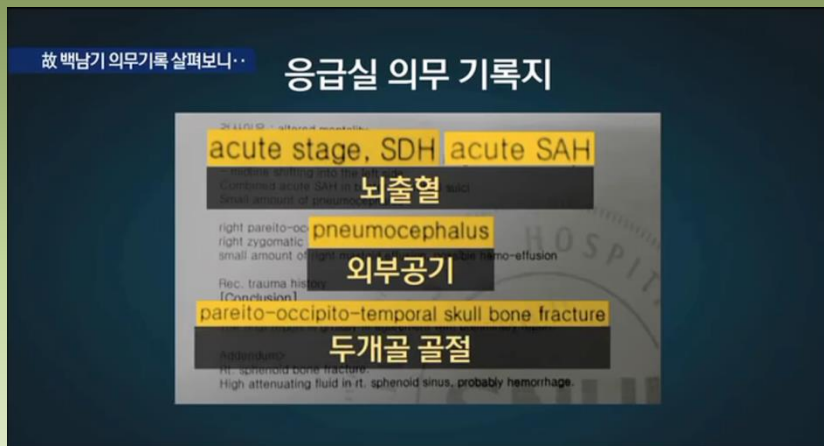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해야 함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함
- 신체훼손을 최소 한도로 해야 함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함
- 유가족에게 부검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故 백남기 선생 사망진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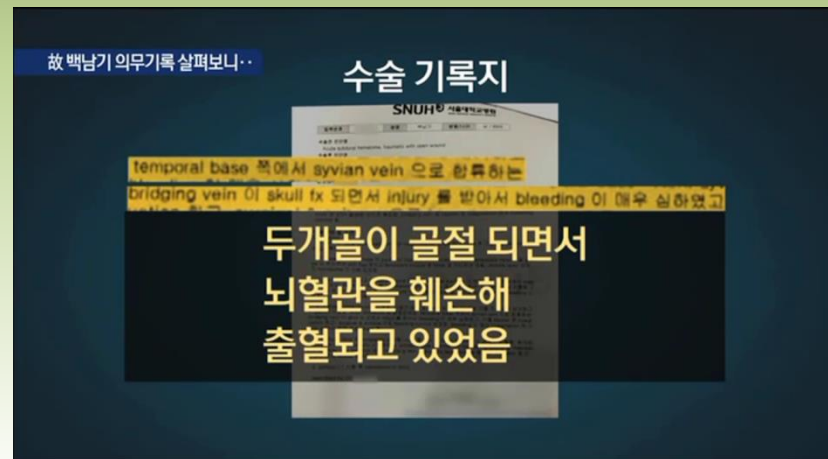
故 백남기 의무기록 살펴보니...		⑩ 기타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나) (가)의 원인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다) (나)의 원인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라) (다)의 원인		급성경막하출혈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시신상환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급성경막하출혈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사망의 종류	<input checked="" type="radio"/> ① 병사	<input type="radio"/> ② 외상	<input type="radio"/> ③ 기타 및 불상	
사고종류	<input type="radio"/> ① 운수(교통)	<input type="radio"/> ② 중독	<input type="radio"/> ③ 추락	
	<input type="radio"/> ④ 익사	<input type="radio"/> ⑤ 화재	<input type="radio"/> 의도성 여	
	<input type="radio"/> ⑥ 기타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따름)			

출처: SBS <3시 뉴스브리핑>

# 故 백 선생 응급실 기록지와 수술기록



출처: SBS <3시 뉴스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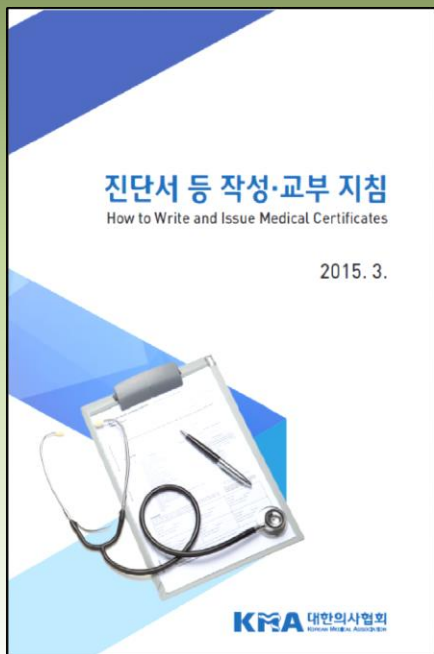


출처: SBS <3시 뉴스브리핑>

국회의원(여수갑)

이영주

# 대한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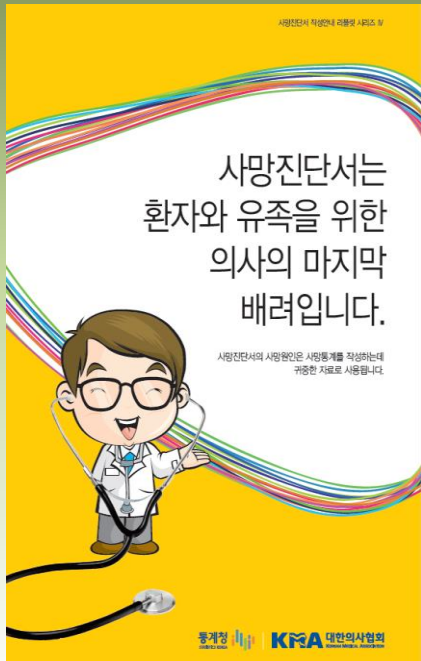
p.42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원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

p.53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여수갑)

이영주

#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



## 4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 ▶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 | 기입 요령 |

– 전신화상으로 치료 중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한 경우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전신화상
사망의 종류		[ ] 병사 [✓] 외인사 [ ] 기타 및 불상

# WHO,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CAUSE OF DEATH		Approximate interval between onset and death
I		
Disease or condition directly leading to death *	(a) . . . . . due to (or as a consequence of)	. . . . .
Antecedent causes Morbid conditions, if any, giving rise to the above cause, stating the underlying condition last	(b) . . . . . due to (or as a consequence of)	. . . . .
	(c) . . . . .	. . . . .
II		
Other significant conditions contributing to the death, but not related to the disease or condition causing it	. . . . .	. . . . .
	. . . . .	. . . . .
* This does not mean the mode of dying, e.g., heart failure, asphyxia, etc. It means the disease, injury, or complication which caused death.		

p.7, WHO 『Medical Certification of Cause of Death』  
-Instructions for Physicians on Use of 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원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검찰청]

# 서향희 변호사 법조브로커 행위 사건 현황

일 자	내 용
2012. 8.	- 서향희 변호사 휴업
2013. 5.	- 5월 초, 도피 중이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서울 강남의 호텔 리베라 내 중식당에 나타남. -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과 그 측근, 서 변호사가 그를 만남 -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 자신이 사건을 맡겼다는 약속을 함 - 서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에 <u>'철거왕 사건' 소개</u>
	- 서 변호사, 김수남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을 만나 사건 관련 청탁을 함(박 회장 측근 진술)
2013. 6.	- 공직기강비서관실, 서 변호사 행보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서 변호사가 박 회장과 사업을 이유로 갖은 만남을 가지던 시점)
2013. 7.	- <u>법무법인 세한, '철거왕 사건' 수입</u>
2014. 9.	- 향소심에서 실형 확정 - <u>법무법인 세한, 수입료 5억 중 2억을 이 회장에게 반환</u>
2016. 9. 9.	- 대한변호사협회,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

#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바뀌는 서향희의 답변

〈질문〉 이금열 사건을 아느냐

월 변호사 휴업계를 내고 전혀 일을 하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탁해서 연수원 은사이기도 하신 송영  
연결해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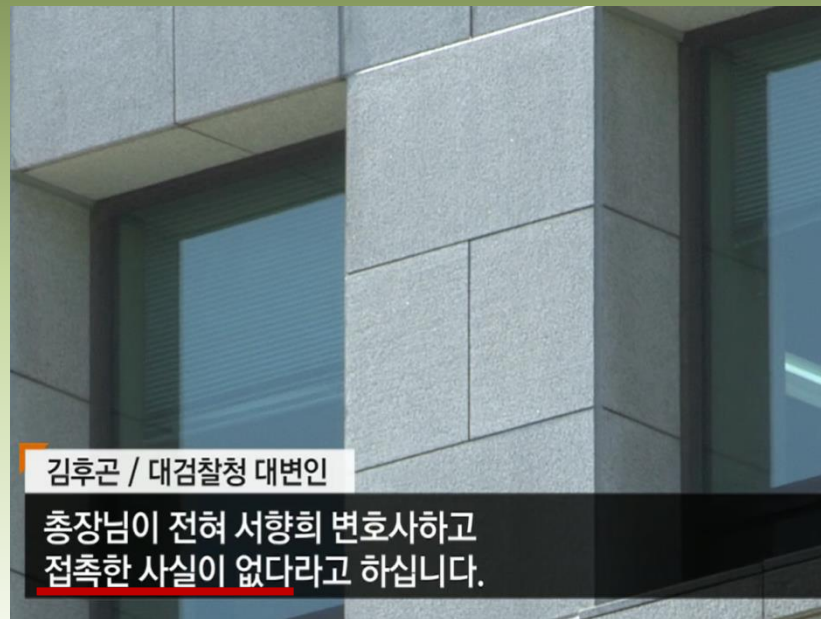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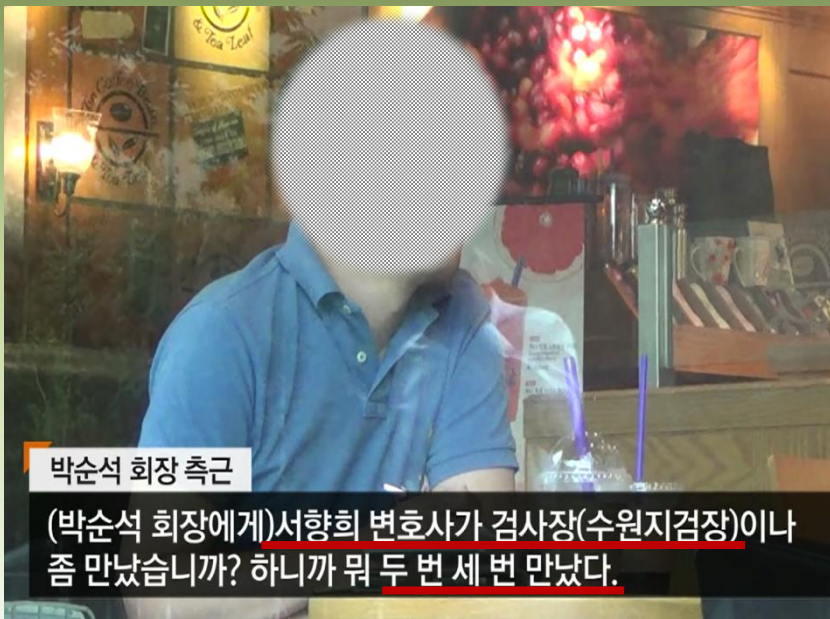
진술 번복!

1. 이금열 회장을 직접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2.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직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수입료는 어찌된 일로  
소개하는 일과 있었지만, 수입인과 위임인 양측이 직  
여 서로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여 주었을 뿐입  
송영천 변호사에게 소개한 본인에게 사  
사실은 송영천 변호사의 업무지  
이 법무부의 세정  
가 법무부의 세정

먼저 알게 된 내용 말고는 체크한 것이  
법원 출신 변호사님들께서 수행하고  
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있고 해  
끝까지 세  
하는 말을

**이게 뭐가 중요할지 잘 모르겠다. 송영천 변호사에게 전달**

#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 변호사와 만났나?



##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 서 변호사의 행보에 주목한 민정수석실

청와대 문건 사건 핵심 관계자(음성 대역)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과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만남을 갖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 **서향희**

민정수석실에서 박순석 회장과 관련된 말이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 후 만나지 않았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검찰청]

# 우병우 처가 소유 부동산 거래과정



2009년 3월	9월	2010년 2월	3월	8월	2011년 3월	3월18일	3월	9월30일	10월13일
○부동산. 우병우 처가 땅 매물자료 보유	○부동산. "x부동산 대표가 '넥슨이 사옥 부지 구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매물정보 제공하면 공동증거하겠다' 고 해서 우 수석 처가 땅 자료 제공했다"고 주장	우병우 처가 소유 부동산 광고 "소유주 이상달씨 사망, 관리는 사위인 검사가 합. 매매가 1173억원"	넥슨 '부동산매입의향서' 우병우 처가 쪽에 보냄 "계약 체결 전까지 조아무개씨 소유 땅 문제 해결해달라"	우병우 처가 '부동산매도의향서' 넥슨에 보냄 "조씨 땅 해결 못해 계약 해지 되면 계약금만 배상하겠다. (사옥 개발 무산에 따른) 민사소송 등 하지 마라"	우병우 처가 매매 계약 체결 미적거림 넥슨 "3월18일까지 매매 결정하라" 통보	넥슨과 우병우 처가 <b>매매계약 체결.</b> 우병우 계약서 검토	○부동산, x부동산 찾아가 왜 단독증거 했느냐고 따지자 "우리 자체 인맥 통해 땅 소개받은 거다. <b>진경준 검사 통해 알게 됐다</b> "는 답변 들었다고 주장	우병우 처가, <b>조씨 땅 소유권 확보.</b> 민사소송에서 승소	넥슨, 우 처가 쪽에 잔금 완납

<출처: 한겨레신문>

# 또 다른 진경준 중개, 김정주 부동산 매매

## 매입전 거주아파트 당시 시세

기준월	매매가			전세가		
	하위	일반	상위	하위	일반	상위
0000.12	145,000	151,000	155,000	38,000	39,500	41,000
0000.11	145,000	151,500	155,000	38,000	39,500	41,000
0000.10	144,000	150,000	155,000	38,000	39,500	41,000
0000.09	133,000	138,500	143,000	38,000	39,500	41,000
0000.08	131,000	138,500	143,500	33,000	34,500	36,000

## 매입 주택 실거래 현황

연도별 거래건수	거래일	실거래가
1건	02. 24.	120,000
1건	10. 10.	123,500
1건	02. 22.	121,500
1건	10. 20	111,000